

품질인증

[] 신청서

[]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 일시	처리기간	45일
신청인	① 성명(대표자)			
	② 상호(법인명)		③ 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④ 면허 유형		⑤ 전화번호	
	⑥ 주소(본점)			
	⑦ 제조장 주소			
신청제품	⑧ 대상 주종(대상 품목)		⑨ 품명(상표명)	
	⑩ 제조방법 기호		⑪ 제조방법 승인일	
	⑫ 원료			
	⑬ 제품생산 개시일		⑭ 연간 생산능력	

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(제8조의2제1항)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(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품 설명서 1부 2.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3.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1부 4.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1부 5.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1부 6. 품질인증서 원본(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에서 정 하는 수수료
------	---	--

인증업체의 정보 공개 동의서

소비자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업체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공개함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요령

- ① 성명(대표자), ② 상호(법인명), ③ 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, ⑤ 전화번호, ⑥ 주소(본점), ⑦ 제조장 주소란은 면허자(대표자)를 기준으로 하여 적습니다.
- ④란은 주류제조면허의 유형(일반주류, 민속주, 농민·생산자단체주류)을 적습니다.
- 품질인증 신청은 주류별(제조방법별)로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⑧란은 신청제품의 대상 주종(대상 품목)을 적습니다.
- ⑨란, ⑩란은 신청제품의 상표명 및 제조방법 기호를 적으며, ⑪란은 신청제품의 제조방법을 「주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.
- ⑫란은 모든 원료를 말하며,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사용원료(배합수 제외)와 첨가물료를 모두 적습니다.
- ⑬란은 신청제품의 생산개시 연월일을 적고, ⑭란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 생산능력을 적습니다.
- 첨부서류 중 '3.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'는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첨부합니다.
- 첨부서류 중 '5.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'는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를 첨부합니다. 단, 코팅병, 종이팩, 도자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합니다.

처리절차

